□□□ 종합감사 결과

2022. 04. 01.



□□□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O 기 간: 2022. 03. 28. ~ 04. 01.(5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9. 04. 0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정보담당관 외 5명)

O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Ⅱ.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건)

	긔		본 처 본	현지	申元		
Al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24	6	11	_	7	_	

O 재정상

(단위: 천원)

						- '	<u> </u>
구 분	계	회 수	추장・부과	감	액	지	급
계	1,102	748	354		0		0
본 처 분	777	748	29		-		-
현지처분	325	_	325		-		-

O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비고
_	_	_	_	_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건/천원】

				처	분요	1. 구	사 항	-	
연번	제목	신 분 상		항	정	상	지	H 정 4	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징수	감액
계	17건	0	0	6	11	0	777	777	0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소홀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1			29	29	
4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5	국내여비 지급 소홀			1			80	80	
6	물품.용역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1				
7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8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9	상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미징구				1				
10	이장수당 지급 소홀				1				
11	준공(물품)검수 소홀				1				
12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1					
13	인감증명발급위임장 확인 소홀				1				
14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1				
15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업무 소홀				1				
16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1			142	142	
17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526	526	

O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천원】

		처 분 요 구 사 항							
연번	제목	신 분 상		행 정 상			재 정 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징수	감액
계	7건	0	0	7	0	0	325	325	0
1	복무관리 소홀			1					
2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1			305	305	
3	수입인지 매입 소홀			1			20	20	
4	산림소득분야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1					
5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1					
6	일반병가 증빙서류 관리 소홀			1					
7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 소홀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미 폐기 현황

일련 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비고
1	2012	하천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분) 실시설계용역	2017.12.31.	
2	2012	하천정비사업(◇◇리 외 3지구) 실시설계용역	2017.12.31.	
3	2012	하천정비사업(◇◇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2017.12.31.	
4	2012	◇◇◇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개 실시설계용역	2017.12.31.	
5	201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2017.12.31.	
6	2012	2012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경2회) 실시설계용역	2017.12.31.	

나. 위법 • 부당내용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공주시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영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에서는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 등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미 폐기 현황과 같이 하천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분)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폐기)하지 않고 □□□ 기록관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O 하천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분)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공주시 기록물평가심의 및 정리(폐기) 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현황

 신청일자	시퀀이	농기	지소재지	취득면적	초과면적	비고
발급일자	신청인	리·동	번지	(m²)	(m²)	01 14
2019.06.04.	000	$\Diamond \Diamond$	410-10	714	441	
2019.06.05.		$\Diamond \Diamond$	410-8	727	441	
2019.09.16. 2019.09.17.	000	$\Diamond \Diamond$	603, 52-3, 32-3	3,404	2,404	\ O \ \=
2021.07.05.	()()()	$\Diamond \Diamond$	32-3,392, 34-1	0.010	0.010	소유상한 (1,000㎡)
2021.07.08.			89–26	3,213	2,213	면적초과
2021.03.31. 2021.03.31.	000	$\Diamond \Diamond$	225-3, 211-3, 224-2	1,075	75	
2020.04.08. 2020.04.09.	000	$\Diamond \Diamond$	216-3	930	_	농업경영
2021.03.26. 2021.03.29.	000	$\Diamond \Diamond$	225-3, 211-3	837	_	목적발급

나. 위법 • 부당 내용

○ 「농지법」제6조(농지 소유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또한,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1천㎡아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농지법」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의 합이 1천㎡ 초과 인 4건을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1천㎡ 미만 2건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신청한 3건에 대하여 서류 보완없이 발급하였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신청인의 날인이 누락 되었는데도 발급한 사실이 다수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농지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수수료 징수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 정 상】 징 수(29,7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O 수수료 미징수 현황

신청일	신청인	소재지	취득목적	미징수금액(원)	비고
	30건			29,700	
2019.12.30.	000	♦♦♦ 537-1	농업경영	1,000	
2020.04.27.	000	♦♦♦ 618	농업경영	1,000	
2020.04.27.	000	♦♦♦ 451-2	농업경영	1,000	
2020.09.21.	000	♦♦♦ 216외	농업경영	1,000	
2020.10.22.	000	♦♦♦ 388	농업경영	1,000	
2020.10.23.	000	♦♦♦ 178-1외	농업경영	1,000	
2020.11.13.	000	♦♦♦ 2-1외	농업경영	1,000	
2020.11.13.	000	♦♦♦ 70외	농업경영	1,000	
2020.11.13.	000	♦♦♦ 380의	농업경영	1,000	
2020.11.13.	000	♦♦♦ 513-5	농업경영	1,000	
2020.12.04.	000	♦♦♦ 72-1	농업경영	1,000	
2020.12.28.	000	♦♦♦ 362-2	농업경영	1,000	
2021.01.27.	000	♦♦♦ 480-7	농업경영	1,000	
2021.04.06.	000	♦♦♦ 210	주말체험영농	1,000	
2021.08.20.	000	♦♦♦ 375외	농업경영	1,000	
2021.09.16.	000	♦♦♦ 19-37외	농업경영	700	
2021.10.08.	000	♦♦♦ 2-1외	농업경영	1,000	
2021.10.08.	000	♦♦♦ 32-3외	주말체험영농	1,000	
2021.10.08.	000	♦♦♦ 32-3외	주말체험영농	1,000	
2021.10.22.	000	♦♦♦ 8	농업경영	1,000	
2021.11.05.	000	♦♦♦ 75	농업경영	1,000	
2021.11.08.	000	♦♦♦ 94-1	농업경영	1,000	
2021.11.19.	000	♦♦♦ 732의	농업경영	1,000	
2021.11.24.	000	♦♦♦ 682외	농업경영	1,000	
2021.12.29.	000	♦♦♦ 82-2외	농업경영	1,000	
2022.02.10.	000	♦♦♦ 692-2	농업경영	1,000	
2022.02.28.	000	♦♦♦ 169	농업경영	1,000	
2022.03.08.	000	♦♦♦ 368	농업경영	1,000	
2022.03.14.	000	♦♦♦ 4-7	농업경영	1,000	
2022.03.14.	000	♦♦♦ 4-7	농업경영	1,000	

나. 위법 • 부당 내용

-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또한, 「농지법」제56조(수수료)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수수료는 1천원이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한 30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대하여 29,700원의 수수료 징수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농지법에」 따라 수수료 미징수금액 29,700원을 징수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내역			정비대장	
일 자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등록여부	비고
17건					
2019.02.12.	관용차량(모닝, 트럭) 수리	☆☆☆☆카센타	140,000	부	
2019.08.08.	관용차량 세차 및 소모품 교체, 수리	☆☆☆️️️️️️️️ 외 1	165,000	부	
2019.12.26.	관화방(고)스크) 수기 및 E10H 교제	☆☆☆☆카센타	640,000	바	
2019. 12.26.	관용차량(화물) 점검 및 수리	☆☆☆☆카센타	495,000	부	
2020.02.10.	관용차량(**구**** /파크) 수선(엔진오일 교환)	☆☆☆☆카센타	40,000	뿌	
2020.02.24.	관용차량(**조**** / 산불진화차량) 수리	☆☆☆☆농기계	110,000	부	
2021.01.06.	관용차량(**구***/스파크) 수선(엔진오일 교환)	☆☆☆☆카센타	40,000	무	
2021.03.23.	관용차량(**너****, 포터) 수선(엔진오일 교환)	☆☆☆☆샵	105,000	부	
2021.06.22.	관용차량(스파크) 수선(후소음기 교환)	☆☆☆☆카센타	130,000	뫄	
2021.09.08.	관용차량(포터, 산불차량) 오일교환 등 정비	☆☆☆세상	338,800	뿌	
2021.10.08.	관용차량(산불차량) 배터리 교체	☆☆☆ 밧데리	110,000	부	
2021.09.24.	관용차량(**구***,스파크) 배터리 교체	☆☆☆세상	110,000	부	
2021.12.07.	관용차량(산불차량) 주행충전기/배선 등 교체	☆☆☆ 밧데리	440,000	뿌	
2021.12.29.	관용차량(**구****,스파크) 엔진오일 교환	☆☆☆☆카센타	40,000	부	
2022.01.19.	관용차량(화물차) 제설작업을 위한 스노우타이어 교체	☆☆☆☆카센타	480,000	여	
2022.02.17.	관용차량(**구**** 스파크) 타이어 교체	☆☆☆☆카센타	280,000	여	
2022.03.03.	관용차량(스파크, **구***) 수리(뒤범퍼)	☆☆☆☆주식회	200,000	여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O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건에 대하여 차량수리 후 차량정비 대장에 기록관리하지 않는 등 차량정비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라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국내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 정 상】 회 수(80,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O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 중복지급 현황

지 급 일 (국내여비)	출장자	월액여비 중복일	지급금액 (원)	회수액 (원)	비고
계		5건	80,000	80,000	
	000	2019.06.04.	20,000	20,000	
2019.10.08.		2019.06.21.	20,000	20,000	
	000	2019.06.21.	20,000	20,000	국내여비 환수
2010 10 07	000	2019.08.30.	10,000	10,000	
2019.12.27.	000	2019.09.26.	10,000	10,000	

나.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 [별표2]에 따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를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기 지급한 월액여비 출장일에 중복하여 국내여비 총 80천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공무원 여비 규정」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일에 중복 지급된 국내여비(80,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물품·용역 계약 대가의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대가지급 현황

일련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대 가 청구일	대 가 지급일	지 급 기 한	지연일	비고
	9건							
1	주민생활편의지원사업 (8차)	☆☆건설(주)	1,100	05.20.	2019.05.27.	2019.05.24.	1	주말 제외
2	생활민원사업 9차(≪)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유리	5,282	06.08.	2020.06.15.	2020.06.12.	1	주말 제외
3	2021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실시설계용 역(◇◇◇리가각부 정 비공사)	(주)☆☆엔지 니어링	495	06.24.	2021.07.05.	2021.06.30.	3	주말 제외
4	2021년 생활민원사업 7차 실시설계용역(◇◇◇ 리 가각부 정비공사)	(주)☆☆엔지 니어링	858	06.24.	2021.07.05.	2021.06.30.	3	주말 제외
5	2021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2추경 〈〉〉〉 리 마을안길 확장공 사)	☆☆건설	10,600	11.24.	2021.12.01.	2021.11.30.	1	주말 제외
6	◇◇◇ 리 농로포장 공 사 관급자재(레미콘)	(주)☆☆아스 콘앤레미콘	5,299	03.31.	2019.04.08.	2019.04.05.	1	주말 제외
7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 (4차) 관급자재(레미콘)	(주)☆☆아스 콘앤레미콘	2,342	04.30.	2019.05.09.	2019.05.07.	2	주말 제외
8	차 리 배수로 정비공 사 관급자재(레미콘)	(주)☆☆아스 콘앤레미콘	1,109	03.31.	2019.04.08.	2019.04.05.	1	주말 제외
9	국토공원화 추진용 꽃묘 구입	* * * *	4,375	04.28.	2020.05.12.	2020.05.06.	4	주말 제외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아무런 사유 없이 주민생활 편의지원사업(8차) 외 8건에 대하여 위 대가지급 현황과 같이 최소 1일 최대 4일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하자검사 현황

		정기 하자검사(건)				만료검사	사(건)		
구 분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비고
Л		1,154	354	800	160	10	150	0	
2019년	상반기	114	114	0	22	0	22	0	
2019년	하반기	92	0	92	20	0	20	0	
00001=	상반기	100	100	0	19	10	9	0	
2020년	하반기	140	140	0	16	0	16	0	
2021년	상반기	352	0	352	16	0	16	0	
2021년	하반기	356	0	356	67	0	67	0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314건(정기 1,154건, 만료 160건)에 대하여 정기 800건, 만료 150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법령을 준수 하여 **하자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현황

지출 사유	지출금액(원)	지급일자	명단여부	비고
3건	1,534,000			
이장단과의 간담회 급식	500,000	2019.12.26.	부	지급번호 391
청사방문 내방객 접대용 음료 등 구입비 지급	500,000	2020.02.10.	부	지급번호 35
직원 사기진작 급식 결의	534,000	2021.12.30.	부	지급번호 537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재한 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상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미징구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원천징수 동의서 징구 현황

대상년도	원천징수 여부	동의서 징구 여부	ΠЪ
2019	여	부	
2020	여	부	
2021	여	부	
2022	여	Й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 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징구하지않고 월액여비 등 수당에서 상록회비를 공제 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이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월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조기지급일)	비고
1	2019.01.21.	2019.01.18.	-3	
2	2019.02.21.	2019.02.20.	-1	
3	2021.03.22.	2021.03.19.	-3	
4	2021.10.21.	2021.10.20.	1	
5	2022.01.25.	2022.01.20.	5	
6	2022.01.28.	2022.01.20.	8	
7	2022.01.25.	2022.01.20.	5	
8	2022.03.21.	2022.03.18.	4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통·리·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장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기본수당 39건 중 3건은 최소 1일, 최대 3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5건은 최소 1일, 최대 8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준공(물품) 검수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O 준공(물품)검수 현황

일련 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중권(북)에 제출일	검수일	검수기한	지연일	비고
	1건							
1	2019 주민생활편의 지원사업(12차)	☆☆건설	5,610	07.09.	07.23.	2019.07.22.	1	
2	2020 ◇◇◇리 농 로 포장공사	☆☆건설	16,810	11.21.	12.05.	2020.12.04.	1	
3	2020 ◇◇리 흄관 매설공사	☆☆산업 개발(주)	13,361	05.11.	05.28.	2020.05.24.	4	

나.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주민생활편의지원사업(12차) 외 2건에 대하여 위 검수 현황과 같이 **검수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2019. 4. 1. ~ 현재)

			자격상	실	장애인등록	류증 반납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비고
1	000	**.**.**	사망말소	20191004	부	미발송	
2	000	**.**.**	사망말소	20191101	부	미발송	
3	000	**.**.**	사망말소	20191112	부	미발송	
4	000	**.**.**	사망말소	20191206	부	미발송	
5	000	**.**.**	사망말소	20200127	부	미발송	
6	000	**.**.**	사망말소	20200209	부	미발송	
7	000	**.**.**	사망말소	20200225	부	미발송	
8	000	**.**.**	사망말소	20200417	부	미발송	
9	000	**.**.**	사망의심	20200527	부	미발송	
10	000	**.**.**	사망말소	20200625	부	미발송	
11	000	**.**.**	장애 미해당 (상태호전)말소	20201012	부	미발송	
12	000	**.**.**	사망말소	20201014	부	미발송	
13	000	**.**.**	사망말소	20201105	부	미발송	
14	000	**.**.**	사망말소	20201122	부	미발송	
15	000	**.**.**	사망말소	20201206	부	미발송	
16	000	**.**.**	사망말소	20201208	부	미발송	
17	000	**.**.**	사망말소	20201225	부	미발송	
18	000	**.**.**	사망말소	20210109	부	미발송	

			자격싱	t실	장애인등록	증 반납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비고
19	000	**.**.**	사망말소	20210221	부	미발송	
20	000	**.**.**	사망말소	20210605	부	미발송	
21	000	**.**.**	사망말소	20210610	부	미발송	
22	000	**.**.**	사망말소	20210615	부	미발송	
23	000	**.**.**	사망말소	20210619	부	미발송	
24	000	**.**.**	사망말소	20210620	부	미발송	
25	000	**.**.**	사망말소	20210624	부	미발송	
26	000	**.**.**	사망말소	20210702	부	미발송	
27	000	**.**.**	사망말소	20210722	부	미발송	
28	000	**.**.**	사망말소	20210726	부	미발송	
29	000	**.**.**	사망말소	20210729	부	미발송	
30	000	**.**.**	*.** 사망말소 20210		부	미발송	
31	000	**.**.**	사망말소	20210811	부	미발송	
32	000	**.**.**	사망말소	20210822	부	미발송	
33	000	**.**.**	사망말소	20210905	부	미발송	
34	000	**.**.**	사망말소	20211024	부	미발송	
35	000	**.**.**	사망말소	20211111	부	미발송	
36	000	**.**.**	사망말소	2021.11.19.	부	미발송	
37	000	**.**.**	사망말소	2021.12.20.	부	미발송	
38	000	**.**.**	사망말소	2021.12.31.	부	미발송	

나. 위법 · 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사망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 된 38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된 38명에 대하여 즉시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확인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위임장		워드프로세서	인감발급번호	비고
기재사항 누락		작성 및 복사본	미기재	
2019. 4. 1. ~ 현재	37건	2건	272건	

나. 위법 • 부당내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동의서의 유효 기간을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의하면 위임장은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감사고시 문서 감정의 대상의 되므로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은 수리할 수 없으며**, 위임장 및 동의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요구】

□□□장은

O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의 위임날짜, 발급 용도 등 기재여부와 자필 작성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하고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재발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 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재발급 수수료 면제사유 확인 소홀	미교
2019년 ~ 감사일 현재	48건	

나. 위법 • 부당내용

- 「주민등록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와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발급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2호 서식]에 면제대상 해당사항에 체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동의를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에 첨부 하고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처분요구】

□□□장은

O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수리 시 수수료 면제사유를 철저히 확인(신청서에 확인사항 기재 또는 증명자료 첨부) 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법 위반 과태료 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주의

【재정상】없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신청기간	불필요 서류 징구	과태료수납부 미정리	미고
2019. 4. 1. ~ 현재	5건	9건	

나. 위법 • 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주민등록법 사무편람」에는 과태료 부과시 **주민등록신고지연사유와 결정된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수납부(규칙 제21호 서식)에 기재**하고(감경적용 시비고란에 감경액 등 기재, 이 경우는 지연사유서 징구 안함), **과태료 납부시에는 과태료수납부에 수납사항을 기재하여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에서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사유서 징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건에 대해 신고(신청)지연 사유서를 징구하였으며, 과태료수납부에 감경적용사항 및 수납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O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과대료 부과 시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과대료 부과 및 수납 시에 과대료수납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미실시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 정 상】 회 수(142,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천원)

7 J B	THE THE	도 급 액		スコ	יי אין אין	TIZULO	СЭЛ	
공 사 명	공사내용	계약	정산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합계	1 건	13,950	13,808	142				
2021년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읍면동장 공모사업 ◇◇◇리 석축 설치공사)	석축설치 (H=1.6~2.1m) L=33m	13,950	13,808	142	2021.10.21. ~2021.11.0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미정산	(합)☆☆건설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초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제10조(정산)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 (계약자)이 환경관리비를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작업실적을 확인하고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2021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읍면동장 공모사업)〉〉〉○리 석축 설치공사 1건】를 준공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수수료와「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비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를 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관련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와 환경보전비 등 142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환경보전비를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 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1건의 합계 142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정상】시정

【재 정 상】 회 수(526,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처워)

공 사 명	공사내용	도 급 액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5 VI S	- 5시대 용	계약	정산	0	등사기선	시작대용	포답자
합 계	3건	33,550	33,024	526			
◇◇◇리 농 로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B=2.5m, L=180m	15,320	15,281	39	2019.10.22. ~2019.11.08.	수축줄눈(프라미어) 미시공	(합)☆☆건설 ○○○
◇◇◇리 배수 로 정비공사	플륨관설치 (800*700) L=143m	10,980	10,688	292	2019.03.15. ~2019.04.08.	콘크리트포장합판 거푸집 미시공	☆☆건설(주) ○○○
◇◇리 석축 설치공사	석축설치 (H=0.5~2.0m) L=15.5m	7,250	7,055	195	2019.12.10. ~2019.12.24.	석축기초합판거푸집 미시공	☆☆건설(주)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에서는 상기와 같이 「◇◇◇리 농로 포장공사외 2건」을 추진하면서 줄눈(프라이머)을 미시공하거나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시공하는 등의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526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3건의 합계 526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